
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

(제5차: 2022~2026년)

2022. 10.

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4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	2
III. 추진 목표 및 전략	7
IV. 추진과제	8
1. 새로운 수요에 맞춘 촘촘한 근로복지 지원	8
2. 대·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	12
3.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	14
4.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	18
5.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	22
붙임: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	27

I. 추진 배경

- “근로복지”는 근로자를 위한 일터에서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유지·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
- 따라서, 정부는 근로자의 경제·사회활동 참여 확대, 근로의욕 증진,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「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」*을 '02년부터 5년마다 수립
- 자율적인 기업복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

*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「고용정책심의회」의 심의를 거쳐 공표

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

-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,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
- ② 우리사주제도,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
- ③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⑥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자원 구성에 관한 사항
- ⑦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
- ⑧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고용형태,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복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*하며

* (복지격차) 1인당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 148천원(300인 이상의 43.2%, '20년)
(임금격차)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 3,717천원(300인 이상의 74.4%, '20년)

- 일하는 방식의 변화(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), 산업전환(저탄소·디지털화)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요구되는 시점

- 그간 「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('17~'21년)」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·연구, 부처 협의* 등을 실시

* 제5차 기본계획 수요 등 연구('21.6~11월), 관계부처 협의 및 검토('21.12월)

☞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, 새 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간 근로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5차 기본계획을 수립

Ⅱ. 제4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

1 제4차 기본계획 개요

□ 기본 방향: “취약계층 근로복지 확충 및 복지격차 완화”

□ 추진 전략

- ①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공공복지 확충
→ 기업규모별(대·중소), 고용형태별(정규·비정규) 근로복지 격차 완화
- ② 대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기업복지 활성화 유도
- ③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,
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책임 강화

□ 주요 과제

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

- 소액체당금(現 간이대지급금) 상향 및 체당금 (現 대지급금) 지급범위 확대
-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
-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보험 강화
- 직장여성 아파트 등 주거안정 지원

②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

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도 제고
- 상생협력 및 복지증진시설 확대 지원
-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 지원
-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

③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

-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도입
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확대
-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재산형성 기반 강화

④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

- 산업단지 교통편의 제공
- 산업단지 문화예술 교육 지원

- ❖ 생계지원 확대, 재산형성 지원,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복지를 확충하고,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

□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강화

- **(생활안정 지원)** 생활안정자금 용자종목 신설 및 용자한도 상향^①, 산재 근로자(유족 및 상병보상연금수급자, 장해 1~7급) 학자금 지원^②
 - ① 자녀양육비 신설('21년), 혼례비 용자한도 확대('17년, 1,000만원→1,250만원)
 - ② 고교 졸업 시까지 입학금,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(1인당 500만원 범위) 지원('18년)
- **(임금체불 해소)**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('21년), 대지급금 상한 인상*,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용자한도 상향('18년 5천만원 → '19년 7천만원 → '21년 1억원)
 - * (소액) 400만원 → 1,000만원('19년), (일반) 1,800만원 → 2,100만원('20년)
- **(사회안전망 강화)**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규가입자 지원 확대^①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'특고'라 함) 산재보험 적용 강화^②
 - ① (~'15년) 1/3~1/2 지원→('16~'17년) 60% 지원→('18~'20년) 80~90% 지원→('21년) 80% 지원
 - ② 27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('19년)
- **(주거안정 지원)** 직장여성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(행복주택 전환, '17년), 저소득·청년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(연간 3.9만호)

□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격차 완화 노력

- **(근로복지기금 운용 개편)**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사내기금의 기본 재산 사용 허용^①, 재정지원·제도정비 등 중소협력업체 공동기금 설립 확산^②
 - 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 시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%까지 사용('18.2월) 대규모 재난,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0%까지 사용 가능('21.1월)
 - ② ▲ “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” 마련·시행('19.9월)
 - ▲ 사업주 출연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(3년간 2억 → 최대 5년간 20억, '20년~)
 - ▲ 설립·운영상 제도 정비를 위한 「근로복지기본법」개정('20.12월)

- **(상생협력 강화)**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확대(법인세 7→10%), 중소기업 복지시설 취득시 세액공제 확대(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7→10%)
- **(비정규직 처우개선)**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(1,021명), 정규직 전환 시 법인세 등 세액공제(전환 인원당 1천만원)

□ **재산형성 및 안정적 노후 대비 지원**

- **(퇴직연금)**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가입대상 확대^①(’17년),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^②
 - ① 자영업자, 기간제·단시간 등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,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
 - ② 가입자 42.6만명, 도입 사업장 8.8만개소, 적립금 3.7조원
- **(우리사주)**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*(’17년), 회사의 정기적 출연 근거 마련,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(교육, 컨설팅) 등
 - * 종업원 300인 이상,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
- **(재산형성)**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(’17년), 근로장려세제(EITC) 최대 지급액 상향^①,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재취업 시 세제 지원^②
 - ① (단독) 77 → 150만원, (홀벌이) 185 → 260만원, (맞벌이) 230 → 300만원
 - ②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100% 세액공제
- **(노후 대비)**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*, 비자발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의무화(고령자고용법 개정, ’20년 시행)
 - * (’15) 50세 이상 재직자 → (’16) 45세 이상 재직자 → (’17) 40세 이상 재직자, 구직자

□ **안전한 일터 및 건강 지원**

-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*, 근로자 건강센터(헬스존) 확충(21개소)
 - * 지원사업장 평균 재해감소(0.0476명), 고용증가(2.1명)
-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 신설(산업안전보건법 개정, ’18년)
- 산업단지 대중교통 노선 신설*,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
 - * 지자체별 산업단지 출퇴근 노선버스 지원사업(보통교부세 배정)

- ❖ 대안적 복지 모델(기업복지 한계 탈피) 모색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미흡, 규모별(대·중소)·고용형태별(정규·비정규) 복지 격차 지속 등

□ 새로운 복지 수요 등장과 신속한 대응 필요

- 코로나19, 새로운 분야(AI를 포함한 DNA, BIG3*) 기술 시장의 확대, 디지털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비대면·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

* DNA(Data, Network, AI), BIG3(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)

→ 플랫폼 노동, IT 기반 이동식 노동, 캐주얼·바우처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급속히 확산*

* (플랫폼종사자) 취업자(15~69세)의 8.5%인 약 220만명(한고원, '21년 실태조사)

- 새로운 고용형태는 일하는 방식의 자율성, 기업의 인력 활용 유연성 등을 높이나, 기업을 통한 근로복지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노출

→ 맞춤형 복지제공 등 '모든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 (social protection floor)' 구축 등 신속한 대응 시급

□ 줄어들지 않는 근로복지 격차 (기업복지의 한계)

-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'법정 외 복지비용'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(43.2%, '20년), '17년 이후 43%대에서 정체

* (법정 외 복지비용)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, 건강보건, 식사, 학자금보조, 사내기금, 우리사주조합 출연금, 경조비, 피복비 등

▶ 연도별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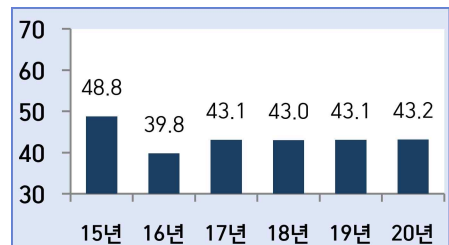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원)

항목	'15	'16	'17	'18	'19	'20
전규모	209.6	197.9	211.3	219.4	224.0	234.2
300인 미만(A)	144.5	120.0	133.5	137.4	141.2	148.0
300인 이상(B)	296.3	301.2	310.6	319.8	327.8	342.3
비율(A/B)	48.8	39.8	43.1	43.0	43.1	43.2

* '20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(고용노동부)

▶ 300인 미만 법정외 복지비용

〈대기업=100, 기업체노동비용조사〉



-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 간 복지격차는 근본적으로 중·소 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 부족에 기인

→ 대·중소기업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생적 근로복지 협력체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

* 공공복지를 확충하고, 기업복지제도가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

□ 공공복지 사업의 편향성과 대안적 복지모델의 모색 필요

-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확대, EAP* 확산 등의 노력에도 여전히 근로복지 진흥기금의 공공복지 사업 중 **용자사업**이 대다수를 차지

* EAP(근로자지원프로그램: Employee Assistance Program): 건강, 심리상담 지원

구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
전체 사업비(억원)	1,285	1,272	1,364	2,548	3,051
용자 사업비(억원)	1,000	950	1,035	2,103	1,691
용자 비중(%)	77.8	74.7	75.9	82.5	55.4

→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공공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, 다만, 용자사업은 지속적인 확대 요구가 있으므로 현장 수요를 고려한 제도 개선 검토

* (생활안정자금 용자) 확대 필요(44.9%), 만족도 지수(90.7점) (‘20년 만족도 조사)

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영세성과 자원 다변화 필요

- 근로복지 격차 완화,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등 늘어나는 근로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 재원의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, 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원 확충에 한계

* (진흥기금 사업규모) (‘17년) 3,266억원 → (‘19년) 3,594억원 → (‘20년) 3,571억원

* (복권기금 전입금) (‘17년) 368 → (‘18년) 409 → (‘19년) 456 → (‘20년) 464억원

*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진흥기금을 통한 사업은 용자사업과 신용보증사업,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, EAP 정도로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에는 한계

→ 자체 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자원 확충방안 마련하여, 취약계층에 복지 지원을 집중할 필요

Ⅲ. 추진 목표 및 전략

목표

모든 일하는 사람을 [아우르는] 근로복지

기본 방향

- ①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
- ② 대·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, 운영방법을 효율화
- ③ 취약계층별 ·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, 인프라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

추진 과제

1. 새로운 수요에 맞춘 촉진한 근로복지 지원

- ①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
- ② 원활한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

2. 대·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

- ① 대·중소기업 간 복지공유 활성화
- ②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

3.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

- ① 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
-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
- ③ 일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

4.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

- ①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
- ② 주거복지 지원
- ③ 일가정 양립 지원
- ④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 지원

5.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

- ①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확충
- ② 우리사주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강화
- ③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
- ④ 근로복지 정보망 개편

Ⅲ. 추진과제

1. 새로운 수요에 맞춘 촘촘한 근로복지 지원

- ❖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, 근로복지 개념 확장: 근로자 복지 → 모든 노무제공자를 위한 근로복지
- ❖ 저탄소·디지털 경제 전환에 발맞춰 산업·일자리 전환을 적극 지원

1

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

- **[노무제공자 보호기반 마련]**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여건 등 근로복지가 취약한 특고,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강화
 -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(차별받지 않을 권리, 건강권, 쉼 권리, 산업안전 등)을 중심으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('22년~)
 - * 전문가 논의체 구성, 입법화 방안 등 마련('22.하) →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추진('23년~)
- **[노무제공 계약의 공정성 강화]** 플랫폼종사자 등을 위한 공정한 계약의 기준을 설정하고, 분쟁 발생시 신속·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노무제공계약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공통 계약모델*을 마련('22년)하고, 다양한 고용형태 직종별 표준(모범)계약서 제정 및 개정 추진('23년~)
 - * 계약, 일하는 방식, 안전보건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공통 표준계약서(안) 마련 추진
 -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, 자율·조정·중재를 통한 해결 등 체계적인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추진('22년 연구용역, '23년~ 제도화 추진)
- **[고용·산재보험 가입 확대]**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지속 확대
 -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
 - * ('22.1월~) 퀵서비스(배달 포함),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 적용
 - ('22.7월~) 캐디,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추가 적용

- 나아가 고용·취업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‘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’ 개편 추진(~’25년)

*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및 체계개편 연구용역 추진(’22년)

-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(’23.7월 시행)에 맞춰 배달라이더, 대리기사, 등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직종의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 지속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(직종) 확대 추진*

* 우선, 고용보험은 적용되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(예: 방과후 강사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)을 중심으로 확대하고, 이 외 보호가 시급한 직종 등은 별도 검토

- **[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]** 배달라이더, 대리기사 등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플랫폼기업이 일터개선 사업 수행시 정부 지원(’22년 신설)*

* 이동노동자 쉼터, 건강진단 등 지원시, 비용의 50% 매칭 지원(年 3억 한도)

- 자치단체 지원방식 등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현장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

- **[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]** 기업 중심 근로복지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공제모델 설립 지원

- 직종·업종별 종사자 수요 등을 조사하여 공통 또는 직종별 공제모델 개발 (연구용역, ’22년), 컨설팅 등을 통해 직종별 공제조합* 설립 지원(’23년~)

* 예시) 국토부 배달라이더 공제조합 설립 추진 中(’23년 설립 목표, 9개 플랫폼사 참여)

-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

* (가칭)노무제공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,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

- **[가사근로자 보호 강화]** 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’ 시행(’22.6월)을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*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활성화 및 직접고용 문화 확산 추진

* 가사근로자법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자

- 인증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,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*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컨설팅 등 지원 강화

*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각각 80% 지원('24.12월까지)

- **[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]**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 등 복지지원 강화 **복지부**

-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,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등 근로여건 개선 단계적 추진('22년~)

* ('22.하) 처우개선위원회 설치·운영 → ('23.하)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실시
→ ('24.하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

- 요양보호사*, 장애인활동지원사, 초등돌봄 종사자 등 돌봄서비스 인력 보수 체계 및 근로여건 등 개선 지속 추진

* ('22.하)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개선 → ('23.하)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

2 원할한 산업 및 일자리 전환 지원

- **[전환과정 고용안정 지원]** 일자리 전환 및 준비과정에서의 고용유지 지원

- 위기산업 노·사가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, 고용환경 개선* 등 지원하는 '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' 신설('22년)

* 기숙사(월세), 통근버스, 사업재편 교육훈련 시설·장비, 사내복지 편의시설 등 최대 5억원

- **[산업·일자리 전환 훈련 지원]** 저탄소·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응하여 재직자 등의 新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 지원 강화

- 장기유급휴가 대상에 산업전환 분야 직무전환 훈련(신재생에너지, 미래차 등) 추가('22년 신설), 지원대상 확대 추진

- 재직자 등이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훈련과정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운영(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*, '22년 신설)

*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수시 훈련수요조사를 거쳐 훈련과정 발굴·공급하는 사업(국민내일배움 카드 활용) → 훈련생은 훈련비 전액 지원(1회 한정) 등 우대

- 산업전환 분야 공동 훈련인프라 강화를 위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*, 대응투자 면제 등 지원 확대** 추진

* 직무 전환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거점 확충('22년 15개소),
산업 전환이 가시화되는 자동차, 에너지,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

** 대응투자 자부담 면제(現 20%) 및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비 추가 지원(최대 3억) 등

□ **[전직지원서비스 강화]** 산업 · 일자리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강화

-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*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전환지원금 신설('22년)

* 생애경력설계 교육, 재취업세미나, 전직준비 컨설팅, 취업상담·알선 등 1인당 최대 300만원

- 중장년 비자발적 퇴직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 대기업(1천명 이상)에 대해 제도 안착을 위한 직종별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컨설팅, 인사담당자 특화교육 등 지원

－ 중소 · 중견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참여 후,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시 비용 일부 지원하는 제도 신설('23년)

- 산업 · 일자리 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'전직 · 재취업 준비'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(워라벨일자리장려금)* 강화

* 전직·재취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, 임금감소보전금, 간접노무비 등 지원

2. 대·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

- ❖ 중소기업 협력업체 복지공유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제도 효율화
- ❖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재원 활용을 통한 기업복지 강화

1 대·중소기업간 복지공유 활성화

- **[복지공유 관련 규제 완화]**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의 복지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의 사용허용 기준 및 범위 개선
 -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의 규모 요건 완화 추진(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, '23년~)
 - * (현행)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 → (개선) 200만원 이상인 기금
 -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의 해당연도 출연금 및 기본재산 사용범위의 차등 적용 추진
 - 복지공유 비율이 높을시 출연금의 90% 및 기본재산의 30% 까지 사용 허용하는 방안 마련('22.하 개편방안 마련 후,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'23년~)

[대기업 사내복지기금 사용 허용 기준 및 범위]

현 행		개 편(안)
해당연도 출연금	▶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시 → 출연금의 50% 사용	동일
	▶ 출연금의 10% 이상 협력업체 지원시 → 출연금의 80% 사용	10% 이상 → 70% 20% 이상 → 80% 30% 이상 → 90%
기본재산	▶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시 → 사용 불가	동일
	▶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근로자의 25% 이상일 때 → 기본재산의 20% 사용 ▶ (재난, 경영위기에 한해)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근로자의 50% 이상일 때 → 기본재산의 30% 사용	25% 이상 → 20% 35% 이상 → 25% 50% 이상 → 30% (재난 등 무관)

□ **[대기업의 복지공유 지원대상 확대]** 대기업이 자체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**협력 중소기업 범위 확대** 추진(근로복지기본법 개정, '23년~)

○ 현재 지원 대상인 1차 협력업체보다 기업복지가 더 취약한 2·3차 협력업체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

* (현행) “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” → (개선) 직접 도급 및 재하도급 소속 근로자

□ **[사내복지기금의 지원한도 인상]**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시, **출연금 100% 사용 허용**(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, '23년~)

* (현행) 해당연도 출연금의 80% → (개선) 출연금의 100%

2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

□ **[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]**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대상 확대

○ 기업 외 비영리법인(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 등)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신설 등 **지원대상 확대** 추진(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, '23년~)

* 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 등 비영리법인 소속 근로자의 복지증진 도모 필요

□ **[사내복지기금 재원 활용의 효율화]** 복지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간 복지 공유 활성화를 위해 사내복지기금법인의 **해산 요건 완화** 추진

○ 장기 비활성 기금법인*의 경우, 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**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**할 경우 해산을 허용** 추진(근로복지기본법 개정, '23년~)

* 예) 최근 5년간 신규 출연이 없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한 내역이 전혀 없는 기금 법인

* (현행) 사내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의 폐업, 타 기금법인 합병 등 제한적으로 해산 허용
→ (개선) 기본재산의 일부를(예: 30%이상) 중소기업 기업복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

3.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

- ❖ 생계비 융자, 임금체불 지원, 사회보험 지원 등을 통해 고용·소득 안정성 강화
- ❖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강화

1 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

□ **[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]** 고용 및 소득 불안정에 놓인 근로자 등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 지원 강화

- 늘어나는 융자수요*에 맞춰 융자방식 개편 및 소득수준별 금리 차등화 방안 마련 검토('23년~)

* (확대필요 복지사업, '21년 근로복지조사 연구) 생활안정자금 융자(43.4%) > 문화·여가지원(21.2%) > 체불임금보장(13.6%) > 퇴직연금(11.4%) > 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(10.3%) 등

※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편방안' 마련 후 추진

현 행		개 편(예시)	
생활안정 자금융자	▶ 융자방식: 대하 ▶ 기준: 중위소득 2/3이하 ▶ 이자율: 1.5% * 소득은 3인가구 기준	저소득층 융자	▶ 대하 ▶ 중위소득 1/2이하 ▶ 1.5%
		일반 융자	▶ 이차보전 ▶ 중위소득 이하 ▶ 1.5% + α

※ 대하방식: 정부예산으로 직접 융자, 이차보전: 금융기관이 융자, 정부는 이자율 일부를 지원

- 저소득층 융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용보증료 개편 검토('23년~)

* (현행) 융자종목별 보증료 상이 0.7%~1%

-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항목을 단순화('23년~)하고*, 제출서류 zero 시스템 구축(마이데이터 연계) 등 비대면 융자 추진('23년~)

* ① '노부모요양비'를 '노부모부양비'로 변경: 노인성 질환 유무 증빙要 → 가족관계증명서로 노부모 유무만 확인

② '임금감소생계비'를 '소액생계비'로 통합: 임금감소 증빙 복잡 → 소액생계비로 통합하고 융자한도는 증액(200→500만원)

□ **[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]**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 강화

-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*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추진

* (현행) 최저임금 110% 미만 재직자에 한해 지원

-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용자 확대('23년~)를 위해 ①용자 한도액 상향, ②상환기간 다양화, ③사업주 기준 완화 등 단계적 확대 추진

① (사업주별) 1억 → 1억 5천, (근로자별) 1,000만원 → 1,500만원

②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→ 1년 거치 3년 또는 4년(선택 가능) 분할 상환

③ 사업기간 1년 이상 → 6개월 이상

- 사업주가 용자 신청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 추진 검토

* (현행) 지원 신청 사업주들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□ **[사회보험료 지원 확대]**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확대

- 직종·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장 규모 요건을 완화*하는 등 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('23년~)

* (현행) 10인 미만 사업 지원 → (개선) 복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, 특고, 플랫폼종사자 등은 사업 규모 제외 추진

- 가사서비스 제공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·국민연금의 80% 지원('22.6월 시행, '24.12월까지)

- 한시 운영중('21.7월~'22.6월)인 저소득·고위험 직종(6개)* 산재보험료 50% 경감 제도를 '23.6월까지 연장, 향후 성과평가 후 확대 등 검토

*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가전제품설치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화물차주 등

□ **[심리안정 지원]** 코로나19,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강화

- 일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권리침해나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노무제공자까지 확대
- 상담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(트라우마센터) 등 유관 기관과의 사업 연계, 전문 상담사 처우개선, 모니터링 등 강화

□ **[건강검진 지원]**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 지원

-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*까지 건강진단 비용의 80% 지원(자부담 20%)

* 환경미화원, 택배기사, 배달종사자, 대리기사, 화물차주 등 ('22년 예산 27억원, 47천명)

□ **[상병수당 급여 신설]**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**[복지부]**

* OECD 38개국 중 한국,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운영

- 시범 사업*('22.7월~, 3년간 시행 예정) 후,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상병수당 본 제도 설계 추진

* 6개 지역(부천·포항·서울종로·천안·순천·창원) 시범 실시('22.7월~), 일 43,960원(최저임금의 60% 수준), 지원예산: ('22.하) 110억

- **[고용안정 지원]**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보조공학기기* 및 중증장애인 출·퇴근 비용 지원* 지속 확대

* 사업주 신청에서 근로자 직접신청·지원으로 확대('22.7월 시행)/('22년) 167억 → ('23년안) 193억

* 교통비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/ ('22년) 26억원(3.9천명) → ('23년안) 69억(15천명)

- **[맞춤형 인재 육성]**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

-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 확충 및 IT 훈련 확대 등 훈련과정 개편* 추진

* 디지털기초역량과정 신설, 기업수요 맞춤형 단기 직무교육 제공 강화 등

- 장애 유형·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형 직무모델 개발과 더불어 신기술분야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(표준사업장) 설립 적극 유도*

* IT 업종 표준사업장 설립 시 디지털 직무역량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 양성과 연계

- **[고용장려금 신설]**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, 장애인고용의무 없는 소규모사업주에 대한 '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' 한시운영('22년~'24년)
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단가 인상 추진('23년~)

*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: 〈現〉 성별·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0~80만원 → 〈'23년안〉 월 35~90만원(경증 5만원, 중증 10만원 인상)

- 상시근로자 수 5~49인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6개월분 장려금* 지급, 이후 연속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추가 지급

* 의무고용률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~32인 사업장에는 최대 1명, 33~49인 사업장에는 최대 2명까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('22년 신설, 24년까지 한시)

4.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

❖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공공복지 지원 강화

* 일자리 정착 → 주거복지 → 일가정양립 → 전직 및 재취업 지원

1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

- **[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]**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('22년 신설, 14만명 지원)

- ▶ (지원대상) 만 15~34세 미취업 ①취업애로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②5인 미만 특례 업종
- ①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, 고졸 이하 학력, 자립준비청년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
②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,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등
- ▶ (지원내용)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월 8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- * '23.1.1.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('23년~)

- **[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]** 일하는 청년의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

-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설('22.하~): 저소득 근로청년(연소득 2,400만원 이하) 대상, 본인 납입액(월 10만원)의 1~3배 정부 매칭 지원(3년 만기) **복지부**
-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('22년~): 장기펀드 가입시(연소득 5천만원 이하)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, 중·장기 자산형성 지원(최대 5년) **기재부**

지원대상 및 상품	지원혜택	납입한도	만기수령금
연소득 2,400만원 이하* 청년내일저축계좌	저축액(월 10만원) 정부가 1~3배 매칭	연 120만원 (3년 만기)	3년 후 720 ~ 1,440만원
연소득 5,000만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	펀드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	연 600만원 (3~5년)	3년 후 1,800만원 + 펀드수익 +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

*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요건도 충족 필요

- **[청년 주거비용 지원]**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 강화 **국토부**

- 저소득 청년(중위소득 60% 이하, 만 19~34세)에게 월 20만원까지 1년간 월세 한시 지원('22년, 15.2만명 지원), 기존 청년 월세대출은 지원요건 및 금리수준 완화('22년~)**

* 연소득 2천만원 → 5천만원 이하 / 금리: 1% → 월 20만원까지 무이자, 초과분 1%

- 중소·중견기업 근무 청년 대상 전·월세 보증금 장기·저리대출*의 일몰 기한을 연장('21년→'23년)하고 고졸 취업자 지원을 위해 연령기준 하향**

* 보증금 2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임차 시, 1억원 한도 융자(금리 연 1.2%)
기본 2년 4회 연장 → 최장 10년까지 지원

** (당초) 만19세 이상 → (변경)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

2

주거복지 지원

- **[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확대]** 주거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* 공급 확대 추진 **국토부**

*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, 창업·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,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

* 공급 물량: '17~'21년 연평균 3.2천호(총 1.6만호) → '23~'27년 연평균 4천호(총 2만호)

- 직장과 근접한 주거공간 제공,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산단 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**[사내 주거시설 설치 지원]** 사업장 내 근로자 주거시설 확대 지원 강화

-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사업장 내 기숙사 신축·매입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대출한도 확대('22년~) **중기부**

* (현행) 대출한도 60억 → (개선) 100억까지 확대

-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주변 주거시설(아파트, 원룸 등) 매입 또는 임대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가능토록 개선(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, '23년~)

* (현행) 기숙사 설치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가능 → (개선) 매입 또는 임대시도 활용

- **[장기 모기지론 확대]**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최장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론(보금자리론) 신설, 민간 확산 등 지속('22년~) **금융위**

*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39세 이하 청년, 6억 이하 주택, 대출한도 3.6억원

- **[행복주택 제도 개선]** 행복주택 제도를 ‘통합공공임대주택’ 제도*로 통합·개편,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신혼부부, 저소득 근로자 등의 주거 부담 완화 **국토부**

* 기존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 → ‘통합공공임대주택’으로 통합(’22년)

- 우선 공급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 포함, 지원 강화(’22년)
- 계약금 인하(임대보증금의 10% → 5%) 및 재청약 요건완화(원칙금지* → 허용), 거주기간 제한 완화(6년 → 30년) 등 개선(’22년~), 지속 제도개선 추진

* 회사 이전, 세대원수 증감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타 행복주택에의 재입주 허용

3

일 . 가정 양립 지원

- **[직장어린이집 확충]** 육아부담 완화와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지원 강화

- 대기업 등이 설치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‘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’ 지속 확충

- **[육아휴직 활성화]**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활성화 추진

- ‘3+3 부모육아휴직제’ 신설(’22년), 부모 모두 육아휴직(만 1세 미만) 사용 시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%(月 최대 3백만원)

- 육아휴직 4~12개월째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(’22년~): 50→80%

- **[아이돌봄서비스 강화]** 육아부담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**여가부**

- 돌봄공백 가구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시간(연 840시간→960시간) 및 지원 가구(7.5만가구→8.5만가구) 확대

-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실시, 자격관리 제도 도입,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검토

- **[고령자 재취업 지원]** 중소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 ‘고령자고용지원금’ 지원(’22년 신설)
 - *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
- **[중장년 전직 지원]** 퇴직 예정 중소기업 중장년 대상 경력 컨설팅 등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, ‘중장년 새출발 크레딧’ 지원(’22년 신설)
 - * (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만 45세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등 (지원방식) 민간컨설팅기관에서 사용가능한 내일배움카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
- **[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]** 신중년의 경험·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시 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
 - *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 신중년 대상

5.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

- ❖ 복권기금 전입금 외 진흥기금 수입 미미 → 운영 효율화로 재원 확충 노력
- ❖ 우리사주 및 퇴직연금제도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

1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영 효율화

- **[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]** 이차보전방식 도입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을 통한 융자지원 강화('23년~)
 - 현행 정부재원으로 직접 융자하는 대하방식과 함께, 금융기관 시중금리의 일부*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 도입·병행 등 검토**
 - * 현행 시중금리 수준과 기존 융자금리(1.5%)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설정
 - **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편방안' 마련 후 추진
- **[변제금 회수율 제고]** 효율적 채권관리를 통해 기금 건전성 강화
 - 장기 미회수 채권은 외부 전문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)에 위탁·채권관리, 근로복지공단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 회수에 집중*(임금채권보장법 개정, '23년~)
 - * 관리대상 선별 · 집중관리, RPA(반복·규칙적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)를 활용, 회수율 제고
 - 대·내외 정보연계 및 재산조사 강화를 통해 다양한 책임재산 확보 지속 추진(임금채권보장법 개정, '23년~)
- **[유휴재원 활용]**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계정간 재원활용 효율화 추진
 - 활용도가 낮은 실업대책계정 잔액 등을 신용보증대위변제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 마련 검토('23년~)

2 우리사주제도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

- **[조합원 참여권 확대]** 조합원의 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참여권 확대 (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, '23년~)

- 조합장의 부재 또는 조합장에 의한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,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(현행) 전체 조합원의 1/5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이 3주 이내 총회 개최
→ (개선) 전체 조합원의 1/5 이상이 직접 총회 개최 가능

- 조합원이 많거나 사업장 분산,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토록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

* (현행)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 선출은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해서만 선출 가능

□ [우리스주 인출권 보장]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출권리* 보장 강화

- 회사의 파산·사업폐지 등 조합의 해산사유 발생 시 조합원이 직접 수탁기관에 우리스주 인출 요청 허용 추진(근로복지기본법 개정, '23년~)

* (현행) 조합원은 직접 인출 요청 불가, 조합만 인출 가능 → (개선) 조합원도 인출 가능

* 회사 파산·청산시 주식가치는 없음에도, 기초연금수급·기초생활수급 등 공적부조 대상심사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 예방

□ [우리스주 취득기회 확대] 장기 근속하면서 우리스주를 지속 취득·보유토록 유도

-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액주주 범위 확대, 주식보유 비율 및 금액기준 상향*, 조합원의 자격요건 완화 방안 마련 추진(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, '23년~)

* (현행)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
→ (개선)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 중 적은 금액 등 검토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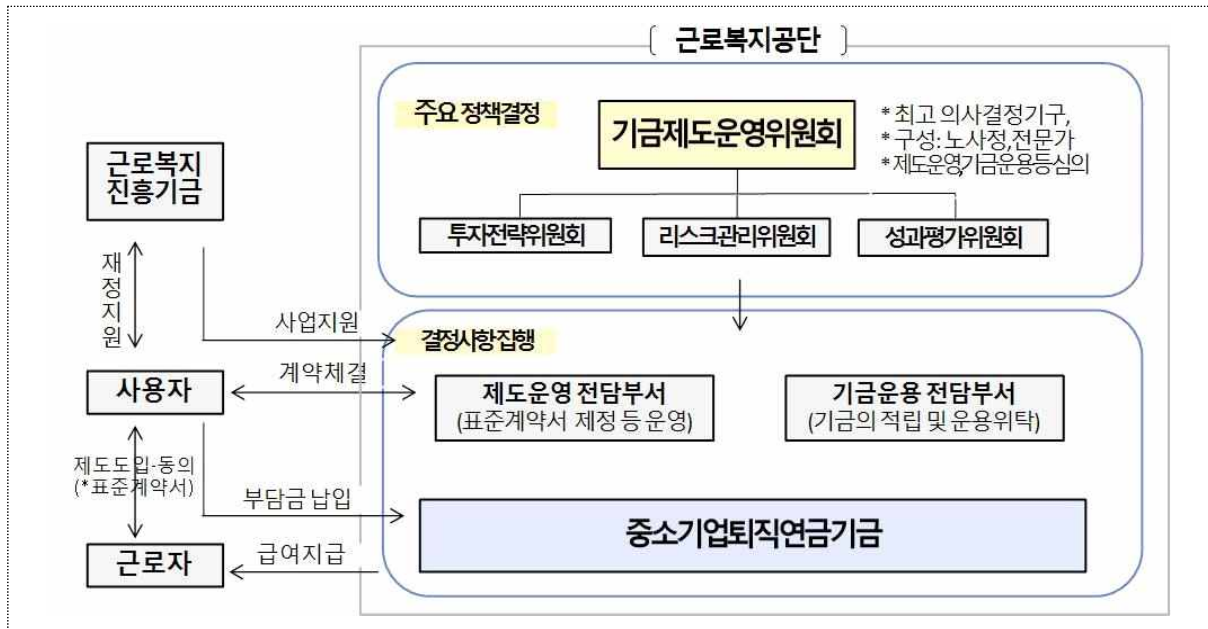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

□ [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]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금제도 신설·운영('22년 신설)

-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(pooling)하여 운영(운영기관: 근로복지공단), 전문적인 자산운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 제고 가능 →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 30인 이하 사업장 도입률 35%* 달성 목표

* ('26년 기준) 도입 사업장수 539천개소, 가입 근로자수 180만명, 적립금 규모 11조원

[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체계]



-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*, 최저수준의 수수료를(0.2% 이하) 책정,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 추진

* 저임금 근로자(최저임금 120% 미만)에 대한 사용자 부담의 10% 한시 지원(3년간)

- **[퇴직연금 의무화]**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추진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, '23년~)

- 중소기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, 사업주 재정지원 등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*병행 검토('23년~)

*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

- **[퇴직연금 적립의무 강화]**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(DB)형 최소적립의무*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('22년 신설)

*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(DB, Defined Benefit)를 도입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(1년, 30일분의 평균임금)을 적립할 의무

* (현행) 제재조치 無 → (개선)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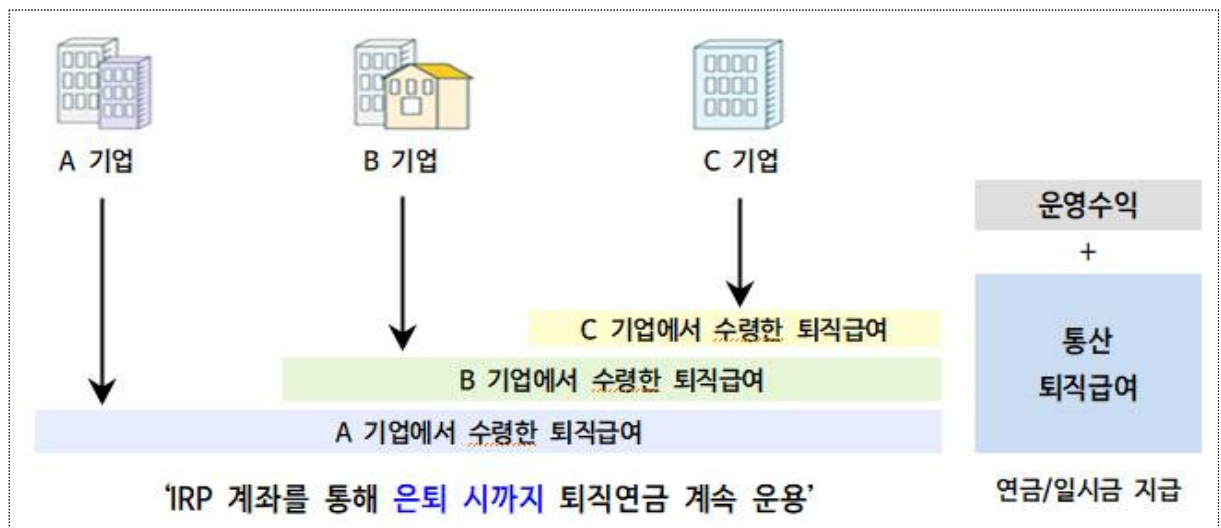
-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의 1/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토록 하여 실질적 이행력 담보 강화('22년~)

□ **[퇴직연금 수익률 제고]** 퇴직연금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연금 수익성 강화

- 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**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·운영**, 수익률 등 **성과관리 강화**(대상: 300명 이상 DB형 도입 사업장)
- 적립금의 운용방법, **목표수익률**, **운용성과 평가** 등이 포함된 **적립금운용 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**(’22년 신설)
-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시, 정부가 사전지정(승인)한 상품에 가입하는 **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 옵션)** 신설(’22년 신설)
- *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: (현행)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운용(수익률 제고 한계)
→ (개선) 정부가 사전지정(승인)한 상품(디폴트 옵션)으로 운용(수익률 제고 가능)

□ **[IRP 지급 의무화]** 안정적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은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적립·운용토록 개편(’22년~), 이후 가입 활성화 지속 유도

-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시에도 근로자의 **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** 계좌로 지급토록 **의무화하여** 은퇴 시까지 계속 운용
- * (현행)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퇴직금 지급 가능
→ (개선)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IRP 계좌로만 퇴직금 지급 가능



- 퇴직(일시)금 지급이 가능한 IRP 지급 예외사유*를 명확히 규정(’22년)

* 55세 이후 퇴직, 일정수준 급여 이하, 사망, 타 법령에서 급여 공제, 외국인근로자 출국 등

- **[퇴직연금 중장기 개편]**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중·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3년~)

*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('22.하) 병행

- 취업 취약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('23년~)

* 예)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추가 납입하면 정부가 부담금을 더해주는 매칭 지원제도(한국형 리스터연금)

4

근로복지 정보망 개편

- **[근로복지 정보플랫폼 통합]** '근로복지서비스'와 '근로복지넷'으로 이원화된 복지 플랫폼을 '근로복지넷'으로 통합 추진

* 복지정보가 산재되어 있고,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하여 이용자의 불편 증가

[근로복지공단 복지정보 제공 플랫폼 체계]

구 분	근로복지서비스	근로복지넷
도 메 인	http://welfare.kcomwel.or.kr	http://www.workdream.net
개시연도	2007. 2월	2009. 2월
주요기능	근로복지서비스 신청 및 처리	근로복지사업 안내 홍보
서비스 대상	임채, 융자·신용, 휴양콘도 등	사업홍보 및 예술제, EAP 등
운영방식	자체운영	위탁운영

- **[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]**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**[중기부]**

- 여행·휴양, 취미·자기계발, 건강관리, 생활·안정, 상품몰 등 복지서비스 분야 및 서비스제공사 지속 확대('22년, 450개소)

-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을 **우수활용기업**으로 인증(22년, 24개소), **인센티브 부여*** 등 활성화 유도

* 성과공유기업 자동지정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부여

붙임
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(안)

추진과제		추진일정					소관부처 및 소관부서
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
1. 새로운 수요에 맞춘 촘촘한 근로복지 지원							
1	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						
▶ 노무제공자 보호기반 마련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노무제공 계약의 공정성 강화							
▶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							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산재보상정책과
▶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							
▶ 가사근로자 보호 강화							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▶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						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
2	원활한 산업 및 일자리 전환 지원						
▶ 전환과정 고용안정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단
▶ 산업·일자리 전환 훈련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인적자원개발과
▶ 전직지원서비스 강화							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단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
2. 대·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							
1	대·중소기업간 복지공유 활성화						
▶ 복지공유 관련 규제 완화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대기업의 복지공유 지원대상 확대							

추진과제		추진일정					소관부처 및 소관부서
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
▶ 사내복지기금 지원한도 인상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2	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						
▶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사내복지기금 재원 활용의 효율화							
3.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							
1	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						
▶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						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▶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							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 고용급여과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산재보상정책과
2	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 지원						
▶ 심리안정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건강검진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
▶ 상병수당 급여 신설							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
3	일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						
▶ 고용안정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▶ 맞춤형 인재 육성							
▶ 고용장려금 신설							

추진과제		추진일정					소관부처 및 소관부서
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
4.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							
1	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						
▶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						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
▶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						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
▶ 청년 주거비용 지원						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2	주거복지 지원						
▶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확대							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▶ 사내 주거시설 설치 지원						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장기 모기지론 확대							금융위원회
▶ 행복주택 제도 개선							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3	일.가정 양립 지원						
▶ 직장어린이집 확충							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▶ 육아휴직 활성화							
▶ 아이돌봄서비스 강화							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
4	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 지원						
▶ 고령자 재취업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▶ 중장년 전직 지원							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TF
▶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							고용노동부

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소관부처 및 소관부서
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
						고령사회인력정책과
5.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						
1	근로복지진흥기금 운영 효율화					
▶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변제금 회수율 제고						
▶ 유휴재원 활용						
2	우리사주제도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					
▶ 조합원 참여권 확대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우리사주 인출권 보장						
▶ 우리사주 취득기회 확대						
3.	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					
▶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					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▶ 퇴직연금 의무화						
▶ 퇴직연금 적립의무 강화						
▶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						
▶ IRP 지급 의무화						
▶ 퇴직연금 중장기 개편						
4	근로복지 정보망 개편					
▶ 근로복지 정보플랫폼 통합					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
▶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						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